금천구청 홈페이지 | www.geumcheon.go.kr
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좋은도시 금천
Good City GeumCheon

금천구보

제2735호

2024. 8. 29.(목)

그린도시(Green City)(2023년 사진공모전 수상작)

서울특별시 금천구 GEUMCHEON-GU

발행인 | 금천구청장 편집인 | 소통담당관

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☎02-2627-1089

목 차

고 시

제2024-8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····· 2

고 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4-88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8월 29일

금천구청장

○ **도로명주소 폐지:** 금천구 범안로11길 54 외 1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
독산동 333-22	범안로11길 54	2024-08-29	건축물대장 말소
독산동 196-43	독산로75길 12-3	2024-08-29	건축물대장 말소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팀(☎02-2627-2132~5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**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**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**도로명주소 변경 등**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**참고사항**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신축 등이 발생하면 고시 후 도로명주소로 사용 가능합니다.